

##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

1998. 5. 14

내부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년 5월 6일 이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5월 8일

다. 상정일자 : 제22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

제1차(98. 5. 14) 내부위원회 상정
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한기영)

#### 가. 제안이유

재난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,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한 기금을 자치단체가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, 재난관리기금의 운용·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-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조성(최저적립액)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적립금,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, 기타 수입금으로 함(안 제2조).
-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하도록 함(안 제3조).

-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위험 시설의 안전진단, 보수·보강, 대피 또는 퇴거명령자의 이주비등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정함(안 제4조).
-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은 총무국장으로,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계장으로 함(안 제5조).
-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,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작성하여 각각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(안 제6조).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안봉환)

본 제정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1997년 8월 30일 법률 제5,404호로 전문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이 19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,662호로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한 기금을 법 제5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 5. 토론판결 : 생략

#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### 7. 기타사항 : 없음